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규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31
------	------

발의일자 : 2025. 5. 29.

발 의 자 : 장규권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며,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근거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 제5조, 제11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 2025. 5. 30. ~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
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

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범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순환경제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장려금·보상금,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운영 및 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18호, 2019.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08.12.24, 2013.9.27]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절약과 쓰레기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3.9.27.>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3.9.27.>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용
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13.9.27.>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집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9., 2013.9.27.>

②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명 개정 2013.9.27] <개정 2013.9.27.>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3.12.19., 2013.9.27., 2017.1.4.>

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명 개정 2013.9.27] <신설 2017.1.4.>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6조(보고 및 검사) 삭제 <1999.7.5>

제7조(과태료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영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9.27., 2017.1.4.>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3.9.27., 2019.5.9.>

1. 삭제 <2019.5.9.>

2. 삭제 <2019.5.9.>

3. 삭제 <2019.5.9.>

4. 삭제 <2019.5.9.>

5. 삭제 <2019.5.9.>

6. 삭제 <2019.5.9.>

[전문개정 2017.1.4.]

제7조의2 삭제 <2017.1.4.>

제8조 삭제 <신설 2008.12.24.> <개정 2013.9.27, 2017.1.4., 2019.5.9.>

제9조 삭제 <2017.1.4.>

제10조 삭제 <2019.5.9.>

제11조 삭제 <2019.5.9.>

제12조 삭제 <2019.5.9.>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명개정 2013.9.27] <개정 2013.9.27.>

부 칙 (제65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6호, 1999.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7호, 200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60호, 2008.12.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750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18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2023. 3.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8. 3. 21.]